

화성상공회의소

“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http://hwaseongcci.korcham.net

우)1859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행정리) / ☎ (031) 350 - 7900, FAX (031) 350 - 7990

문서번호 화상교 제 77 호

시행일자 2021. 2. 1.

경 유

수 신 기업(기관)대표

참 조 경영기획·교육부서장

선				지	
결				시	
접	일 자			결	
	시 간				
수	번 호			재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제 목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신고서 작성 및 실업급여제도」 교육 개최 안내(환급 과정)

1. 귀사(기관)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회의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신고서 작성 및 실업급여제도」
교육을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개최하여 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 2021. 3. 5.(금) 09:00 ~ 18:00 (8H)

나. 장소 : 화성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향남읍 토성로 14 [행정리 327번지])

다. 강사 : 김관민 노무사(정동 노무사 컨설팅 그룹)

라. 교육내용 : [붙임] 자료 참조

마. 교육대상 : 인사·노무·법무·총무·경영 실무자 및 관리자(선착순 40명)

바. 수강료(고용보험 환급과정) : - 회원기업 80,000원 - 비회원기업 120,000원

유형	우선지원대상(중소·중견기업)	대상 외 1000인 미만 기업	1000인 이상 대기업
환급 예상금	61,257원	40,838원	27,225원

※ 교육비 환급은 수업에 80% 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교육 시 식사 미제공

사. 교육비 입금계좌(기업은행, 532-016394-04-017, 예금주 : 화성상공회의소)

※ 2.26.(금) 15:00까지 교육비 입금(입금 순 마감), 교육 당일 환불 불가

3.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서류(1.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3. 통장사본)을 준비하시어 이메일(**hsciedu@gmail.com**)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사업팀(TEL:031-350-7930~79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교육 세부 내역 1부
2.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끝.

화 성 상 공 회 의 소 회 장 박 성 권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신고서 작성(건설업 포함) 및
실업급여제도 실무」(환급 과정)**

<(필수사항)QR코드인식 출결관리 및 지문인식 시스템 사용법>

- 정부 정책에 따라 고용보험 환급과정 교육 시 QR코드인식 출결관리 또는 지문인식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교육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① PC에서 직업능력지식포털(<http://www.hrd.go.kr>)사이트 개인회원가입(휴대폰인증 및 실명인증 필요)
- ②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어플 설치
- ※ 상세 매뉴얼 : [화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해당 교육 게시판] 참고 / 문의사항 : ☎ 031-350-7930~1

1. 고용보험 환급과정 교육 개요

- **환급과정 교육은 총 수강시간의 80% 이상 참석하셔야 환급 및 수료 가능합니다.**
- QR코드인식 및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출석·퇴실 시간이 자동으로 인식되어 부정출결을 차단합니다.

2. 교육 목표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과 납부를 위한 보험 관련 법령을 이해하여 적합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보험료 관리를 할 수 있다.
- 특히 건설업에 있어서 놓칠 수 있는 중요 쟁점 사항을 일반사업과 별도로 진행하여 충분한 보험료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 아울러, 고용·산재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최근 확대·강화되는 근로자 자격관리와 이에 따른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적절한 인력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3. 교육 세부 내역

	교육 내용
<p>오전 수업 (09:00~12: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산재보험제도 적용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라지는 고용, 산재보험제도 -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특례 적용 - 사업 종류별 중요한 적용 사례 ● 근로자 자격 및 고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취득, 고용정보 신고 실무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와 4대보험 적용 - 적용제외자, 휴직 등 특수한 경우 신고 실무
<p>점심시간 (12:00~13:00)</p>	
<p>오후 수업 (13:00~17: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산정 및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율, 보험료 경감 및 지원제도 -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 실무 -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실무 ● 건설업 보험료 산정 및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부과 및 납부방식의 이해 - 건설업 보험료 산정 실무 - 보험료신고서 작성 실무 ● 실업급여제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이직사유의 이해와 사례 - 현장에서 알아야 할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쟁점 - 사업주의 의무와 과태료, 부정수급 문제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본 계약의 “갑” 과 “을”은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범위

교육 과정명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신고서 작성 및 실업급여제도		훈련 일 수	1일
훈련 일정	2021. 3. 5.(금)	훈련 시간	8시간	
① 회사명			사업장 관리번호	
훈련생 성명/직책			주민등록번호	
사무실 연락처			휴대폰 번호	
①번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자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채용예정자(아직 채용하지 않은 경우)			
훈련비용(1인)	<input type="checkbox"/> 회원 80,000원 <input type="checkbox"/> 비회원 120,000원	사업주(훈련담당부서장) 휴대번호		
		계산서발급 E-MAIL(영수발행 원칙)	E-MAIL : 요청날짜 :	
		사업장 계좌번호(환급받으실 계좌)	은행 : 계좌 : 예금주 :	

제2조 계약방식

위탁계약 체결 시 “을”이 제시한 훈련비용을 “갑”이 “을”에게 선 지급하고 “을”이 정부지원금을 신청·수령 후 “갑”에게 환급하는 방식을 취한다.(산업인력공단 위탁계약체결방식 중 2형에 해당)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훈련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훈련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의미한다.

제4조 계약금액 및 지급

가. 총 계약금은 훈련생 1인당 상공회의소 회원업체의 경우 80,000원, 비회원업체의 경우 120,000원으로 하며 정부지원금과 자비부담금으로 구분한다.

구분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상 외 기업 1000인 미만	대상 외 기업 1000인 이상
자비부담금(회원/비회원)	18,743원/58,743원	39,162원/79,162원	52,775원/92,775원
정부지원금	61,257원	40,838원	27,225원

나. 계약금액 중 교육훈련비는 훈련개시 전까지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교육 시작 이후 “갑”에 의해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 “갑”이 책임을 진다.

다. “갑”은 가항 및 나항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을”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제5조 훈련진행에 관한 사항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해 인정된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갑”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 “을”이 책임을 진다.

제6조 수수료

“을”은 훈련과정 인정상의 훈련수수료기준을 통과한 위탁훈련생에 한하여 수수료처리하고 수수료증을 발급한다.

제7조 개인정보동의

계약서상의 훈련생 개인 및 훈련 관련정보는 교육실시신고, 환급금 및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제공됨에 동의한다.

제8조 해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행 당사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최고하며, 불이행 당사자가 최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021년 월 일

훈련위탁사업주[갑]		훈련기관[을]	
회사명		회사명	화성상공회의소
대표자	[직인날인]	회 장	박 성 권

